

제6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의 건승과 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5조에 의거 제68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26년 03월 30일(월요일) 오전 10시 00분

2. 장 소 : 전북 군산시 외항7길 20 (소룡동) (주)에스에이치에너지화학 대회의실

3. 회의 목적 사항

가. 보고사항 : 감사보고, 영업보고,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, 외부감사인 선임보고

나. 부의안건

제1호 의안 : 제68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

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(첨부 1)

제2-1호 의안: 주식병합에 따른 액면가액 변경(1주의 금액 500원 ---> 5,000원)

제2-2호 의안: (개정) 상법 반영

제3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(첨부 2)

제3-1호 의안: 사내이사 최찬욱 선임의 건

제3-2호 의안: 사외이사 이준수 선임의 건

제3-3호 의안: 기타비상무이사 이남녕 선임의 건

제4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
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(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)에 비치하였으며,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

가. 본인 또는 대리인의 참석에 의한 행사

: 주주님께서서는 본인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시거나 대리인을 대신 참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▶ 본인이 직접 의결권 행사시

: 주주총회 참석장, 신분증 지참

▶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시

: 주주총회 참석장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기명날인),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

나.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

우리회사는 「상법」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.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.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가) 전자투표 관리시스템

- 인터넷 주소 : 「<https://evote.ksd.or.kr>」

- 모바일 주소 : 「<https://evote.ksd.or.kr/m>」

나) 전자투표 행사 기간 : 2026년 03월 20일 09시 ~ 2026년 03월 29일 17시

(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)

다)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

-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: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(K-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)

라) 수정동의안 처리 :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

6. 기타사항

가. 상법시행령 제31조 4항 4호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일 1주전까지 당사 홈페이지(<http://www.sh-enerchem.com>)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「DART-정기공시」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금번 주주총회에서는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
2026년 03월 13일



주식회사 SH에너지화학

대표이사 정 케 빈 규 봉 (직인생략)

(첨부 1) 정관 변경 (안)

현 행	변 경 (안)	비 고
제6조 (1주의 금액)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.	제6조 (1주의 금액)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,000원으로 한다.	10:1 주식 액면병합
제18조 (소집지)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 및 서울 시내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.	제18조 (소집지와 개최방식) ①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 및 서울 시내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.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.	주석신설
제21조 (주주의 의결권과 대리행사) ① (생략) ② 제 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(위임장)을 제출하여야 한다.	제21조 (주주의 의결권과 대리행사) ① (좌동) ② 제 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	본문개정
제26조 (이사의 수)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8명 이내로 하고,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. ② (신설)	제26조 (이사의 수)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8명 이내로 하고, 독립이사는 이사총수 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. ② 독립이사의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 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.	명칭변경 및 독립이사 수 상향주석 신설
제29조 (이사의 보선) ① (생략) ② 사외이사가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	제29조 (이사의 보선) ① (좌동) ② (삭제)	제26조 제2항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삭제
제31조의 4(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) 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배(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.	제31조의 4(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) 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배(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.	사외이사 명칭 변경
제37조 (감사위원회의 구성)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.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③ 위원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, 사외이사가 아닌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	제37조 (감사위원회의 구성) ① (좌동) ② (좌동) 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.	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규정 변경 적용

현 행	변 경 (안)	비 고
<p>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</p> <p>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.</p> <p>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.</p> <p>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,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p> <p>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 (신설)</p>	<p>④ <u>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감사위원회 위원 해임에 관한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. 또한 독립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·해임의 경우에도 같다.</u></p> <p>⑤ (삭제)</p> <p>⑥ (삭제)</p> <p>⑦ (삭제)</p> <p>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⑥ <u>독립이사의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변경 규정 적용</p> <p>주석 일부 삭제</p> <p>주석 신설</p>
	<p>부 칙 (2026. 3. 30) 제1조 (시행일) 본 정관은 202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6조(1주의 금액)은 주식병합 효력발생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주주의 의결권과 대리행사) 제18조 및 제21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3조 (독립이사에 대한 경과조치) 제26조, 제31조의 4, 제37조의 3항, 4항, 6항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 시행한다. 다만, 제26조 제1항의 이사회 내 독립이사의 수는 <법률 제20991호, 2025.7.22.>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시행 후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.</p>	<p>부칙 신설</p>

(첨부 2) 이사 선임의 건

사내이사 최찬욱 선임의 건

성명 (출생년월)	추천인	주요약력	최대주주와의 관계	
최찬욱 (1959.09) (사내이사)	이사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 전공 -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Global MBA - LG화학 경영혁신담당 상무 - 세기아케마 사장 겸 아케마 아시아 생산담당 - 현) KS광학 고문 - 현)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	해당사항 없음	
회사와의 3년간 거래내역		체납사실여부	부실기업 경영진 여부	법령상 결격사유 유무
없음		없음	없음	없음

사외이사 이준수 선임의 건

성명 (출생년월)	추천인	주요약력	최대주주와의 관계	
이준수 (1965.12) (사외이사)	이사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국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석사 - 피델리스 자산운용 부문대표 - 경남큐에스에프 부사장 - 현) 동성회계법인 본부장 - 현) SH에너지화학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	해당사항 없음	
회사와의 3년간 거래내역		체납사실여부	부실기업 경영진 여부	법령상 결격사유 유무
없음		없음	없음	없음

기타비상무이사 이남녕 선임의 건

성명 (출생년월)	추천인	주요약력	최대주주와의 관계	
이남녕 (1953.05) (기타비상무이사)	이사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국 Columbia University Marketing MBA - (주)LG화학 상무 - SH에너지화학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- 현) 피앤에이글로벌리소스 대표이사 	해당사항 없음	
회사와의 3년간 거래내역		체납사실여부	부실기업 경영진 여부	법령상 결격사유 유무
없음		없음	없음	없음